EUGENE
유진기업

희망퇴직 실시

2020. 12. 30

1. 신청 대상 : 차 / 부장급 직원

※ 희망퇴직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, 회사의 심사를 통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
2. 신청 기한 : 2021년 1월 8일(금) 까지

3. 신청 방법 : 희망퇴직 신청서 작성 후 팀장/공장장의 결재를 득하여 경영관리팀 제출
(담당 : 장민수 과장)

※ 희망퇴직 신청서 양식 : 별첨 참조

4. 희망퇴직자 처우

1) 퇴직위로금(근속기간별) : 월 급여 x 지급개월

지 급 기 준	지 급 개 월	비 고
근속 20년 이상	18개월	월 급여 : 기본급 + 업적급 + 고정OT
근속 15년 이상	16개월	
근속 10년 이상	14개월	
근속 10년 미만	12개월	

2) 자녀학자금 : 1년 지원(2021년 限, 학자금 규정에 따름)

3) 실업급여 수급 지원

5. 기타사항

1) 최종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: 2021년 1월 25일 이전

2) 퇴직 기준일 : 2021년 1월 31일

※ 사정에 따라 개인별로 퇴사일 조정 가능

※ 별첨 : 희망퇴직 신청서 1부. "끝"

EUGENE
유진기업

희망퇴직 신청서

부　　서 :

직　　급 :

성　　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상기 본인은 유진기업(주)(이하 "회사")가 2020년 12월 30일 부로 안내 / 공지한 희망퇴직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정한 의사표시로써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.

=== 아　　래 ===

1. 희망퇴직과 관련하여, 회사에서 정한 지원 조건에 동의합니다.

2. 희망퇴직 심사결과를 비롯한 本 희망퇴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향후 일체의 민·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.

3. 회사의 심사를 통해 희망퇴직자로 승인된 후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 청 인 :　　(인)

책 임 자 :　　(인)

유진기업(주) 대표이사 귀하

유진홈데이 희망퇴직제 실시 안내

'희망퇴직제'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 아 래 ---

1. 자격 요건

1) 별도의 지원 자격요건이 없으며 유진홈데이 직원이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.

2) 단, 신청자 중 회사는 심사를 통하여 희망퇴직여부를 승인하며,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2.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

1)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.

2) 위로금은 개인별 근속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의 4~6개월 분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정규직 직원>

구 분	지급 산식
근속 기간 2년 이상자	월 기본급 x 6개월
근속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자	월 기본급 x 5개월
근속 기간 1년 미만자	월 기본급 x 4개월

* 월기본급 = 월급여에서 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

<계약직 및 인턴 직원>

월 기본급 x (계약 잔여기간 x 50%) 단, 위로금이 월 기본급 1개월 분 미만인 경우 1개월 기본급 지급

3) 근속기간 또는 계약 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.

4) 위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 처리됩니다.

3. 희망퇴직 신청 방법 및 승인

1) 신청기간 : 5월 29일(수) ~ 6월 7일(금)

2) 신청방법

① 첨부된 "희망퇴직신청서 및 사직원"을 작성, 서명하여 스캔본 1부를 인재개발팀장에게 이메일(mojean@eugenes.co.kr)제출하시고, 원본은 점장(팀장)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② 한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3) 승인안내 :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는 6월 12일(수) 예정입니다.

4) 기타 서류 제출 등 행정업무

① 희망퇴직자로 결정된 직원은 6월 21일(금)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서식을 제출

② 서류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.

4. 퇴사일자

1) 희망퇴직자로 결정된 직원의 퇴사일은 6월 30일입니다.

2) 단,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개인별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그러한 경우 퇴사일은 별도로 통보합니다.

5. 문의사항

1) 희망퇴직에 관한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, 양경모 팀장(02-331-6120 / 010-3322-732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) 본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는 직원은 모두 **실업급여 수혜 대상자**입니다. 끝.

※ 첨 부: 희망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각 1부.

2019. 5. 29

인재개발팀장

【기 안 지】

기안일자 : 2012년 7월 26일(목)

문서번호 : 동건인총 제2012 - 호

수 신 : 품 의

경 유 :

참 조 :

발 신 : 인사총무팀장

결 재	책임자	본부장	사 장
기안 부서			
수신 부서			

기안자 : 대리 금경호 (Tel.3770-3053) 보존년한 : 년

제 목 : **희망퇴직 시행 품의**

당사가 직면한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을 시행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 아 래 ---

1. 적용대상 : 건설부문 정규직원

2. 신청기간 : 2012. 7. 30(월) ~ 8. 6(월) [8일간]

3. 시행방법

구 분	세부내용	비 고
희망퇴직 공고	·T-ONE 사내알림 게시판에 희망퇴직 시행 공고문 게재	
희망퇴직 신청	·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신청으로 당사 사직서 양식 작성 ·퇴직사유에 희망퇴직으로 기재하여 소속부서 결재 없이 제출	·수신:인사총무팀장

4. 희망퇴직자 처우기준

1) 퇴직위로금 지급

① 지급기준 : 통상임금 [기본급 + 자가운전보조비 + 식대(본사기준)]

② 지급금액 : 근속기간별 차등지급

근속기간	지급금액	비 고
5년 미만	통상임금 3개월분	
5년 이상 10년 미만	통상임금 4개월분	
10년 이상 15년 미만	통상임금 5개월분	
15년 이상	통상임금 6개월분	

2)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대상으로 처리

5. 퇴직일자 : 2012. 8. 16(목)

첨 부 : 희망퇴직 시행 공고문 1부. 끝.

의견 및 지시 / 협조(합의) :	회 람 :

희망퇴직 및 휴직 시행 공고

▶ 당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'경영정상화 방안'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희망퇴직 및 휴직을 시행하오니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 아 래 ---

1. 적용대상 : 2004. 11. 26현재, 건설 전직원

2. 접수기간 : 2004. 11. 26(금) ~ 11. 29(월), 12:00

3. 희망퇴직자 처우기준

1) 퇴직위로금 지급 : 연봉표상의 연봉 × (1/19) × 6개월

2)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대상으로 처리

3) 퇴직후 적극적인 재취업 알선

4) 협력업체 등 선정시 동일조건 우선순위 부여

5) 차후 인력채용시 우선 채용

4. 휴직자 처우기준

1) 휴직기간 : 휴직일로부터 6개월

2) 휴직기간중 급여 : 평균임금(기본급+직책/특근) × 70%

3)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

4) 휴직기간중 복직 의사가 없을 경우 휴직자는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임금정산

5)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은 휴직 직전을 기준으로 함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Notes 게시판을 참조하시고, 문의사항이 있을시
과장 안준수(Tel:828-1024, 3770-2967)에게 문의 바랍니다.